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596
----------	-----

제출년월일 : 2007. 11. 21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정이유

- 신청사 건립(이전)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신청사 건립(이전)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 2007. 9. 3 울산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신청사 부지가 혁신도시 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중구청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2조, 제3조)
- 기금의 관리 운용(안 제4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8조)
-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제10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자치부 제237호 - 2007. 5. 7)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007. 10. 16 ~ 11. 5)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
3. 지방채 발행
4. 울산광역시 보조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신청사건립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준공 시까지 적용 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9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 11. 21(수)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2007. 11. 26(월)

라. 위원회 상정 : 2008. 3. 13(목) - 최초 상정 : 2007.12. 5(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2007년 9월 3일 울산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구 신청사 부지가 혁신도시 내로 실시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중구청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경비로 함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신청사 건립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은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함

(안 제6조)

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5.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행정자치부 제237호 2007.5.7)

6. 검토보고 요지

가. 우리구의 재정 여건상 구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
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적 예측을 갖고 미리 준비하려는 것으로 적
정한 것으로 사료됨.

나. 다만,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중 제2호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전
액을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
재산중 구 소유의 매각대금은 구 계획에 따라 전액을 신청사 건
립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할 것이나, 국가소유의 재산 매각대금을
중구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
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2007. 12. 5. 최초 상정시 검토보고 요지임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 기금은 구 금고 중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은 구 금고 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